

부산지방법원 2022. 11. 24 선고 2022가단4270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10. 27.

판 결 선 고 2022. 11. 24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8. 11. 체결된 증여계약을 664만 원 한도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664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○ 원고는 2020. 2. 17. D에게 1000만 원을 이율 월 2.5%, 변제기 2020. 8. 18.로 정하여 이 사건 대여를 하고, D으로부터 2020. 7. 18.부터 2022. 2. 21.까지 사이에 합계 936만 원을 그 원리금으로 수령하였다.

○ D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8. 11. 남편인 피고에게 같은 날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.

○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직후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, 채무자 D, 채권최고액 9000만 원의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,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, 채무자 피고, 채권최고액 2억 570만 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, 8, 11-1 내지 11-5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,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, D이 그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성립한다. 그러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한편,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사실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,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,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대여 1개월 후인 2020. 3. 17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2. 9. 16.까지 30개월간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범위 내 이자는 600만 원($= 1000\text{만 원} \times \text{연 } 24\% \times 30/12\text{개월}$)이므로,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돈은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1600만 원에서 앞서 본 변제금 합계 936만 원을 공제한 664만 원이 된다.

3. 결 론

이 사건 증여계약은 664만 원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664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

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.

판사 이우철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,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파트 동

[도로명주소]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

전유부분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 :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 : 122.57㎡



대지권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55007㎡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17040㎡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19839㎡

대지권의 종류 : 위 토지의 소유권

대지권의 비율 : 9188600분의6272

끝.

